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60

발의연월일: 2021. 4. 16.

발 의 자:임이자·하영제·김영식

권명호 · 추경호 · 박덕흠

송석준·서범수·홍준표

박대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학원과 학교, 어린이집 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나,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조 항이 미비함.

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「감염병의

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).

나.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, 시정명령 또는 위탁계약 해지, 훈련과정 인정 취소,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, 제19조, 제2 4조 및 제31조).

법률 제 호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감염병에 관한 조치)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명할 수 있다.

제1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10조의2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제19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7. 제10조의2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7. 제10조의2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중 "제1호 또는 제3호"를 "제2호 또는 제4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, 같은

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0조의2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감염병에 관한 조치)
	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발
	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
	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
	자에게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
	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
	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
	<u>수 있다.</u>
제16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	제16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	2
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	
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	
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	
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	
해지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제10조의2에 따른 명령에 따
	르지 아니한 경우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・	제19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・

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<u>7.</u>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- 제24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 ① (생략)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

계좌석압운단과성의 인성 및 인
정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10조의2에 따른 명령에 따
르지 아니한 경우
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
인정 및 인정취소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
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7. (생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31조(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호(제29조제 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로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1. ~ 8. (생 략)

② (생략)

,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10조의2에 따른 명령에 따
르지 아니한 경우
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세31조(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
취소 등) ①
<u>제2호 또는 제4호</u>
1. 제10조의2에 따른 명령에 따
르지 아니한 경우
<u>2.</u> ∼ <u>9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8호
까지와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